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1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서영교・이해식・황정아

김준형 • 조인철 • 한민수

정태호 · 이연희 · 송재봉

오세희 • 이춘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 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 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법률 제 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이 경우 중앙회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예탁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예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등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 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 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해당-----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 이 경우 중앙회가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 여 이를 변제한다. <후단 신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 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예탁금 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 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 회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 등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

<u>⑤</u>·<u>⑥</u> (생 략)

①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른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할 수
있다.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u>®</u>
<u>제7항</u>